

공증의 신뢰 회복

유 원 규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공증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문서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이에 신뢰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요즈음 공증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지난해 9월, 협회는 제8회 공증주간을 기념하여 회원과 법무부 공증 실무 관계자 등과 함께 ‘공증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회원들로부터 공증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보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여서 회원이 생각하는 공증제도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공증 실무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장기적인 공증제도 선진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많은 의견 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공증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다양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보다 더 크고 한결같은 회원들의 의견은 공증인의 권위를 회복하여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근래 들어 공증사무에 관한 지침들을 계속 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증사무를 법대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공증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부 공증인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공증 전반의 업무관행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등 시행으로 대부계약서 공증시 대부업자 일방의 촉탁에 의한 공증이 금지되면서, 소위 집단공증에 따른 비대면 공증관행도 일부 정상화되고,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도 자격 있는 실제 번역자의 출석이 의무화되어 비번역인의 번역문 인증 촉탁이라는 잘못된 관행도 사라질 것이며, 위법한 공증수수료 할인 행위 또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침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공증 분야의 적폐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다. 공증인 자격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공증이라는 용어를 내세워 하는 상업적 광고 행위는 아직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증사무소 근처에는 공증이라는 입간판을 내걸고 공증인이 아니면서도 버젓이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은 물론 공증사무소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공증수수료 할인행위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량으로 공증 촉탁을 취급하는 채권추심업자나 번역 업무 종사자들이 아직도 수수료할인을 요구하고, 할인을 받더라도 좀 더 할인 폭이 큰 공증사무소를 찾아다닌다고 한다. 특히 서울 지역의 대량 공증 촉탁업자들은 본인들의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찾아다니거나 주기적으로 여러 공증사무소를 옮겨 다니면서 공증사무소 사이의 할인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야기도 여전히 들린다. 공증업무 처리 건수 감소로 수입이 적어진 공증사무소가 대량의 공증업무를 맡으려는 유혹에 빠져 스스로가 집단공증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브로커사무장이 채용된 일부 공증사무소의 경우, 브로커사무장이 거래처 관리를 하면서 공증사무를 대량으로 유치해 오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는 인센티브 형태로 사무장이 제공받고, 사무장은 인센티브 일부를 다시 거래처에 접대비 형태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변형된 공증수수료 할인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치 공증수

수료가 적법하게 수수된 것처럼 법무부가 요구하는 필요 서류는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를 피하고, 뒤로는 지능적으로 공증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사실상 제공하면서 서로가 수익을 챙기는 편법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법무부 지침을 준수하는 다수 회원 사무소는 소위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여서 적법하게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증인들의 사기와 품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증인법에서도 협회는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 향상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인 까닭에 공증인법상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가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는 달리 회원에 대한 1차적인 제재방법이 없어 협회의 설립목적은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공증이 예방사법의 주축이고 국가사무인 만큼 법무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벌칙의 엄격한 적용이 중요하겠지만, 공증인들의 모임인 협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회원은 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지도·감독권을 강력히 시행하여 내부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제에 회원들이 나서기 어려운 비공증인들의 유사 공증행위에 대하여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협회 내 강력한 조사 기능을 갖춘 인력과 기구가 새롭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여러 회원들의 뜻도 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협회는 최근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회칙상 특별위원회로서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사위원회규정을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협회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과 회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공증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으로부터 공증인의 직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예정이다.

향후 공증인 자격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공증 용어를 상업적으로 광고하거나, 공증 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와 같은 공증인법을 위반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집단 공증 등에 관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무부 또는 관계기관에 단속 또는 징계 건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임무를 강력히 수행할 것이다.

법무부는 공증인이 임기 또는 인가 유효기간 만료시 재임명, 재인가를 신청할 경우 공증인법상 징계처분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려 향후 5년간은 재임명,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증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증인보조자로 신고된 직원 중 이른바 브로커사무장들은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협회에 신고만 하면 다른 공증사무소로 옮겨 다니며 같은 짓을 반복할 수 있어 공증인보조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러한 브로커사무장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공증인법상 공증인 보

조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는 공증인법 개정을 추진, 공증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공증인 보조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자정활동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2014년 한 해 실시한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에 대한 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인가공증인 53곳,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2월 말 협회 정회원 수 기준으로 볼 때 약 17%에 달하는 회원이 징계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징계 회원 수는 2011년도 188명, 2012년도 153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나, 징계건수가 대폭 감소했던 2013년도 101명보다는 오히려 45%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징계유형별 건수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듯하다. 지난해의 징계에서도 비대면 공증으로 인한 징계가 75.2%로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대면 공증 총 건수는 2013년도 9,787건에서 2014년 1,188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할인으로 인한 징계 또한 2013년도 9.9%에서 6.2% 비율로 낮아졌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하다.

올해 초 전국 대학 교수 37%가 뽑은 2015년 ‘희망의 사자성어’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고 한다. ‘한서 형법지(漢書 刑法志)’에서 유래된 이 말은,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즉 기본에 충실하자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방사법 제도인 공증 업무에서도 ‘정본청원’의 정신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스스로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겨볼 문구가 아닐까 한다. 